

1964年 1月 19日 制定  
1974年 4月 20日 改正  
1982年 3月 5日 改正  
1988年 2月 20日 改正  
1990年 7月 9日 改正  
1994年 2月 14日 改正  
1997年 1月 28日 改正  
2022年 1月 27日 改正

# 定 款

社團法人 大韓舞踊協會

# 정 관

##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무용협회(이하"본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 제2조 (소재지)

본 법인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지회는 본부에서 겸임하고 관장한다.

### 제3조 (목적)

본 법인은 무용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무용예술문화교류를 통하여 무용가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무용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2. 무용예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무용예술정보에 관한 건의 및 동시책에 관한 건의사항
4. 무용예술기법개발 및 용어통일에 관한 사항
5. 무용예술강습에 관한 사항
6. 무용예술전문지등 출판에 관한 사항
7. 신인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8. 무용예술의 상호연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기타 무용예술발전향상에 관한 제반사항

##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무용예술 제 부문에서 활동하는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무용예술인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자
2. 무대예술무용의 창작 또는 안무능력이 있는 자
3. 무용경력 만오년이상의 자로 공인되는 자
4. 무용공연의 경력을 가진 자
5. 기타 무용예술계 발전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에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제반 수익금 납부

###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 제9조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법인의 사업에 역행한 때
3.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때

(2) 전항의 징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명
2. 견 책
3. 자격정지
4. 경 고

### 제 3 장 임 원

#### 제10조 (임원)

본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약간 명
2. 이사장 1인
3. 부이사장 6인
4. 이 사 30인
5. 감 사 3인

#### 제11조 (선출)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전항의 고문을 제외한 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취임한다.

#### 제12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결원 시는 이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3조 (고문)

고문은 본 법인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 (이사장)

이사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본 법인의 사업을 통괄한다.

#### 제15조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시는 부이사장 6인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건의하며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제17조 (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 4 장 총 회

#### 제18조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결의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9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0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제21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2) 전항의 결의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24조 (부의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3. 제반 내부규정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고문 추대에 관한 사항
6. 각 분과위원회의 제반사항 심의
7. 사무국장의 임면 승인
8. 회원가입 심의
9. 각 지부 설치에 관한 심사 인준
10. 기타 중요사항

### 제 6 장 분 과 위 원 회

제25조 (구성) 본 법인은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한국전통무용분과위원회
2. 한국무용 분과위원회
3. 발레분과 위원회
4. 현대무용 분과위원회
5. 학술분과위원회
6. 국제분과위원회

#### 제26조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7조 (위원장)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사업을 관장한다.

#### 제28조 (회의)

분과위원회는 무용예술 질적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관장하며 결의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9조 (선출)

분과위원장은 해당분과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제 7 장 재 정

#### 제30조 (재산)

- (1)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 (2)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을 임대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 (세입 등) 본 법인은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1. 회 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수입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본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2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 8 장 사 무 국

제33조 (설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4조 (직원) 사무국에 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35조 (사무국장 등)

- (1)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 동의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 사무를 처리한다.
-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 9 장 보 칙

제36조 (해산)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 재산 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을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38조 (정관변경)

- (1) 본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 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정관변경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 (1)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본 법인의 예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3) 본 법인은 연1회 업무현황(12월 말 현재의 것을 익년도 1월 말일까지)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4) 기부금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40조 (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본 법인의 규칙으로 한다.

1. 지회 및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 정관과 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부 칙

- (1) (시행일) 이 정관은 본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본 법인의 초대임원 기타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본 법인의 설립총회에서 선출 또는 정한다.